

1. 개정이유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 청구인의 행정정보 확인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마련(안 제9조)

- 1) 영 제41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르도록 함.
- 2)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합동 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되, 손실보상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함.
- 3) 영 제41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별지 제6호·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27. ~ 11. 10.) 예정

3) 행정규제 : 생략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41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②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합동 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 제41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신규, ☐ 추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음 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발생 일시 및 장소								
	손실내용 및 청구이유								
구 분	☐ 물건의 멸실·훼손 손실 ☐ 그 외 재산상 손실 ☐ 생명·신체 손실								
신청액	손실액 산출 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지급일자				지급기관(지급자)				
	지급금액 금 원								
통지 방법	☐ 우편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그 밖의 방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청구인 제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뒤쪽)

첨부서류					
구분			청구인 제출 첨부서류 예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만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산상 손실	물건의 멸실・ 훼손	수리비	1. 수리견적서 또는 영수증과 그 내역서 2. 출입문 등 주택 파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자동차등록증
		교환가액	교환 물품의 구매영수증 등 손실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멸실・ 훼손 외 손실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실	손실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명・신체 손실		사망	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해・상해	장해・상해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등),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 등 의료비 영수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 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보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실확인, 통지, 보상금 지급 등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처리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신청을 위임해야 합니다.
3.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손실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 수 처리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	심의·의결 처리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결정서 통보 처리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	---	--	---	------------------------------	---	---

보상금 []일부 지급 결정 통지서
[]전부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6항·제7항·제9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전화번호: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직인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결정 통지서 []각하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 기각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하

년 월 일

※ 문의 전화번호: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직인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청구 (신청) 내용			
접수일시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 문의 전화번호: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u> <u>서식) ① 영 제41조제1항의 보</u> <u>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4호</u> <u>서식을 따른다.</u> <u>②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u> <u>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u> <u>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u> <u>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u> <u>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u> <u>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u> <u>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u> <u>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u> <u>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u> <u>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실</u> <u>보상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u> <u>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u> <u>하도록 해야 한다.</u> <u>1. 주민등록표 등본</u> <u>2. 가족관계증명서</u> <u>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u> <u>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u> <u>우로 한정한다)</u> <u>③ 영 제41조제6항에 따른 통지</u> <u>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u>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
· 기각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